

#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(안)

◇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노동·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.

## I 사업개요

□ 사업명 :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

□ 추진근거 : 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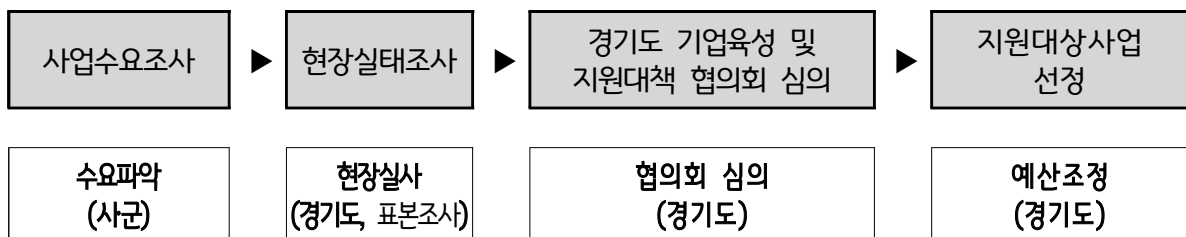
◆ 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9조(기업환경개선사업 선정), 제11조(기업육성및지원대책협의회 운영 등)에 의거 기업경영 관련 기반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「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」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□ 사업기간 : 2021년 1월~12월

□ 사업내용

- 기반시설 개선사업 :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
- 노동환경 개선사업 :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
-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: 노후된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
- 작업환경 개선사업 :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

※ 지원절차



□ 선정기준 : 사업분야별 심사표(참고1)

□ 재원비율 : 도비 3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40%

※ 단,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시·군별 차등보조율 적용

※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% 하향(도비 4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30%)

□ 사업주체 : 시·군

## II

# 사업별 지원기준

구 분	지원대상	지원내용	지원요건	재원비율	지원한도
기반시설 개선사업	중소기업 밀집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로 확·포장</li> <li>상·하수도</li> <li>소교량</li> <li>우수관 정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시급성, 주변환경, 시·군 재정여건, 과거 지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</li> <li>참여기업 10개소 이상</li> <li>지원제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타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중인 사업</li> <li>- 시설이 양호한 사업</li> <li>- 사유지 사용승인·동의를 어려운 사업</li> <li>- 총사업비 7억원 이상 및 연차별 추진 사업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·군 차등보조율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비 2억원 이내 (총사업비 7억원 이내)</li> </ul>
노동환경 개선사업	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·소기업 (제조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숙사, 휴게실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 설치 및 개보수</li> <li>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</li> </ul> ※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으로 총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</li> <li>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50억원 이하 기업</li> <li>지원제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타 유사사업과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 중복지원</li> <li>-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</li> <li>-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</li> <li>- 무허가 건물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비 30%</li> <li>시·군비 30%</li> <li>자부담 40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비 15백만원 이내</li> </ul> ※기숙사 신축의 경우, 도비 30백만원 이내
지식산업 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	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 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차장 및 (주차설비 포함)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·보수</li> <li>노화 기계설비 개보수</li> <li>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준공 후 10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로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</li> <li>지원제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타 유사사업과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 중복지원</li> <li>-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비 30%</li> <li>시·군비 30%</li> <li>자부담 40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비 30백만원 이내</li> </ul>
작업환경 개선사업	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 (제조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작업공간 개보수 (바닥, 천정, 벽면, 창호 등)</li> <li>적재대</li> <li>작업대</li> <li>환기·집진장치</li> <li>LED조명 설치 (작업공간만 해당)</li> <li>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으로 총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</li> <li>지원제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타 유사사업과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 중복지원</li> <li>-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</li> <li>-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</li> <li>- 무허가 건물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비 30%</li> <li>시·군비 30%</li> <li>자부담 40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비 10백만원 이내</li> </ul>

## 1 기본시설 개선사업

구 분	세 부 사 항
지원대상	도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
지원내용	도로 확·포장, 상·하수도, 소교량, 우수관 정비
지원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 시급성, 주변환경, 시·군 재정여건, 과거 지원실적 등 감안</li> <li>• 참여기업 10개소 이상, 다수기업 우선 반영</li> </ul>
재원비율	2021년 시·군 차등보조율 적용
지원한도	도비 2억원 이내 (총사업비 7억원 이내)
지원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혜효과(수혜기업, 종업원 등) 및 사업 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</li> <li>• 주변 이해관계인 등 사전 협의·동의를 완료된 사업</li> <li>• 현지실태조사 시점에서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100%인 시·군 사업</li> <li>•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이 20%이상 또는 수혜 여성 종업원 비율이 전체의 20%이상인 사업</li> <li>• 수혜기업 중 뿌리기업<sup>1)</sup> 비율이 20%이상인 사업</li> <li>• 수혜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%이상인 사업</li> </ul>
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당초 시·군 자체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등</li> </ul> </li> <li>•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, 사용 승락 등 동의확보가 어려운 사업</li> <li>•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</li> <li>• 상수도 설치 신청기업의 지역이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보급지역</li> <li>•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경우</li> </ul>

1) 뿌리기업 :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의 기업

## ② 노동환경 개선사업

구 분	세 부 사 항
지원대상	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·소기업(제조업)
지원내용	<p>기숙사, 휴게실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, 정화조 등 설치 및 개·보수, 기숙사 신축,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</p> <p>※ 지원허용 : 보일러,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</p> <p>※ 지원제외 : ① TV, 냉장고, 선풍기, 에어컨, 식탁 등의 집기류,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, 소모품 등 해당 시설·설비 개·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</p> <p>《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》</p> <p>- 지원대상: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※ 건폐율 용적률 등 저축 관련 사전협의</p> <p>- 제외대상: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,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, 공사추진 중인 경우</p>
지원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·폐업체 제외)</li> <li>•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</li> <li>•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50억원 이하 기업</li> </ul>
재원비율	<p>도비 3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40%</p> <p>※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% 하향(도비 4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30%)</p>
지원한도	<p>도비 15백만원 이내</p> <p>※ 기숙사 신축의 경우, 개소 당 <b>도비 30백만원</b> 이내</p> <p>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)</p>
지원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이상인 기업</li> <li>•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</li> <li>•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, 어린이집 설치 기업</li> <li>•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</li> </ul>
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타 유사사업과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 중복지원</li> <li>• 임대·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</li> <li>•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</li> <li>•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를 불가능한 사업</li> <li>•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</li> <li>•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</li> <li>•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</li> </ul>

### 3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

구 분	세 부 사 항
지원대상	도내 소재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지원내용	주차장(주차설비 포함)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, 노화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,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※ 지원제외 :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, 소모품 등 해당 시설·설비 개·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
지원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</li> <li>•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</li> </ul>
재원비율	도비 3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40%
지원한도	도비 30백만원 이내 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)
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타 유사사업과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 중복지원</li> <li>• 시설이 양호하여 개·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</li> <li>•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</li> <li>•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</li> <li>•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</li> <li>•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</li> <li>•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</li> </ul>

#### 4] 작업환경 개선사업

구 분	세 부 사 항
지원대상	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(제조업)
지원내용	<p>작업공간 내부(바닥, 천장, 벽면, 창호 등) 개보수,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, 적재대, 작업대, 환기·집진장치 설치, LED조명 설치,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(작업공간만 해당: 연구실, 사무실 제외)</p> <p>※ 지원제외 : 소모품, 생산 설비,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(예) 이동식 공구함, 이동식 대차, 공구·기계류 부착 등 주문제작 작업대</p>
지원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·폐업체 제외)</li> <li>•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</li> </ul>
재원비율	<p>도비 3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40%</p> <p>※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% 하향(도비 4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30%)</p>
지원한도	<p>도비 10백만원 이내</p> <p>※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<b>도비 13백만원 이내</b></p>
지원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이상인 기업</li> <li>•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<sup>2)</sup>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</li> <li>•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<sup>3)</sup>, 어린이집 설치 기업</li> <li>•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</li> </ul>
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타 유사사업과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 중복지원</li> <li>• 임대·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</li> <li>•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</li> <li>•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</li> <li>•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</li> <li>•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</li> <li>•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</li> </ul>

2)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: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, 근무환경,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

3)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: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2.9% 이상 장애인 고용

## □ 사업선정 시 유의사항(시·군)

## ○ 사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조사 철저

- 사업계획서 미흡, 지원내용과 무관한 사업 포함 시 선정심의 상정 불가
- 사업별 심사점수에 따른 시·군 우선순위 선정(선정심의 반영)

## • 사업 선정 시 유의사항

① 최근 5년(2016년~2020년) 사업 수혜기업 지원 제외

- 사업 분야 중(기반, 노동, 지식, 작업) 한번이라도 지원내역 있는 기업 제외  
(예) 2016년 A회사 화장실 개보수 지원 → 최근 5년 수혜기업으로 사업신청 불가  
2015년 B회사 화장실 개보수 지원 → 6년 경과하여 사업신청 가능
- ※ 단, 동일사업인 화장실 개보수 사업은 지원 불가 → 다른 사업 지원 가능

· 과거 지원이력에 따라 기업 우선순위 선정

(예) 과거 지원이력 없는 기업 1순위 선정, 10년전 지원기업 2순위, 9년전 3순위... 등

② 화재위험 장소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우선 선정③ 시·군 예산현황 및 사업추진 일정 등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 선정

- 시·군 추경예산 확보 불가로 인한 이월 방지, **2021년 10월 이전 완료 가능한 사업 선정**

## ○ 사업대상의 인허가, 신고 및 관계기관 협의 가능 여부 사전 확인

- 불법건축물 여부, 공장등록 여부(공장면적 500m<sup>2</sup> 이상일 경우)
- 도로 확포장, 상하수도 설치 시 토지사용 동의
- 기숙사 신축, 증축 및 공장 개보수 관련 건폐율, 용적율, 건축물 용도

## ○ 개별업체의 사업 분야별(기반, 노동, 지식, 작업) 중복 지원 불가

- 단일사업 분야 내에서 복수 지원 가능

(예) 기숙사(노동), 바닥도장(작업) 지원 불가 / 기숙사(노동), 화장실 개보수(노동) 지원 가능

## ○ 예산 집행 등 기타사항

-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(노동환경, 지식산업센터, 작업환경)

- 자부담금은 사업 착수 전까지 확보 증빙서류(통장사본 등) 확인

- 집행 시 시·군 담당자 관리감독 및 정산 철저

- 다음의 경우 대체사업 발굴하여 도 변경승인 신청

- 사업포기 및 지원내용 변경 발생 시(구체적인 사유 명시)

- 선정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진행을 지연할 경우

-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

- 지원내용의 세부 수량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 없이 변경 가능

## □ 사업신청 제출서류

-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서(서식1)
- 시군별 신청사업 총괄표(서식2)
- 시군별 신청사업 심사점수표(서식3) ※ 사업분야별 심사기준(참고1) 참고

## IV

### 향후계획

- 2020년 7월~8월 : 2021년 사업 수요조사(시·군)
- 2020년 10월 : 2021년 사업 현장실태조사(도, 표본조사)
- 2020년 12월 : ‘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’ 선정 심의
- 2021년 1월 : 2021년 사업 사업비 교부